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
----------	-----

제출년월일 : 2000. 5.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조리면 죽원리의 “죽”자가 죽음을 연상케하는 불길한 발음이라하여 해당주민들이 리 명칭 사용을 꺼리고 이의 개정요구가 있어 “죽원리”의 명칭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원리(大院里)로 변경하여 주민의 욕구 충족과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竹院)1리”를 “대원(大院)1리”로, “죽원2리”를 “대원2리”로, “죽원3리”를 “대원3리”로 “리”명칭 변경(안 제4조 별표)

나. (다른 조례의 개정) 1.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한다.

2.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조리면 란의 “죽원1리”를“대원1리”로, “죽원2리”를“대원2리”로, “죽원3리”를 “대원3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대원리”로 한다.

2.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대원리”로 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941-2144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이 순 용
	시 정 담 당	김 규 범
	담 당 자	김 영 준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읍면동	리·통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조리면	23	143		조리면	23	143	
	죽원1리	1반~9반	(생략)		대원1리	1반~9반	(현행과 같음)
	죽원2리	1반~5반	(생략)		대원2리	1반~5반	(현행과 같음)
	죽원3리	1반~3반	(생략)		대원3리	1반~3반	(현행과 같음)